



무세미 제조장치의 영업비밀 부정취득 및 부정사용 관련 항소심 사건

10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일본 오사카고등법원	사건번호	평성12년(네) 제4392호
판결 일자	2001. 7. 31	판결 결과	항소 기각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동양정미기제작소		
피고 (피항소인)	1. 辻 慶典, 2. B		
참조 법령			
영업 비밀	무세미(취사 시 물로 쌀을 씻을 필요를 없애는 것) 장치 개발		
키워드 (Keyword)	영업비밀, 출원 전 비밀유지		

02 사건 개요

항소인은 미리 쌀을 씻어 쌀겨가루 등을 제거하고 소비자가 쌀을 씻을 필요가 없도록 가공한 씻을 필요 없는 쌀(무세미)에 관한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다. 파산자 주식회사 약진기계제작소(이하 "파산회사")의 대표이사 피항소인B(이하 "피항소인B")는 상기 영업비밀을 알게 되어 파산회사에 무단으로 공개하였다. 또한 파산회사가 상기 영업비밀 취득·사용하여, 무세미 제조 장치를 제작하고 판매하였는 바, 이로 인한 손해, 명예침해, 신용훼손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이유로 파산채권으로 신고채권 확정을 요구한 사건이다.

03 주요 쟁점

원 고 (항소인)



피 고 (피항소인)

파산회사 및 피항소인B는 파산회사가 나호 장치를 제조 판매하는 것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

항소인의 대표이사 A는 1978년경, 다음 무세미(건조씻은쌀)의 제법 및 장치에 관한 사항을 개발, 발명했다.

항소인은 출입금지 게시를 한 공장 안의 잠금장치를 한 방에서 시작하고, A가 자택에서 설계도 등의 자료를 보관하고, 본건 영업비밀을 관리하고 있었다.

침해하지 않았다.

무세미의 제조방법 및 제조장치를 발명하고, 상기 발명을 특허출원하지 않고 영업비밀로 했다고 하여, 이를 본건 영업비밀이라고 하고, 그 내용을 원판결 첨부별지(4)기재와 같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어 왔는데, 당심에서 본건 영업비밀을 상기와 같이 변경하는 주장을 한 것으로, 이런 주장은 신의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민소법 157조에 의해 각하를 신청한다.

본건 계획서는 그 체재, 공증인의 확정일자, 위치, 내용 및 항소인의 제조판매제품 및 본건 계속당초와 본건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 등에서, 성립은 매우 의문스럽고, 신용성이 없다. 따라서, 본건 계획서에 의한 본건 영업비밀은 존재하지 않는다.

04 판결 요지

피항소인이 본건 영업비밀의 변경을 했다고 볼 수 없고, 새로운 주장이 추가된 것이 아니라 본건 영업비밀을 상기와 같이 주장했다고 하기 위한 논의는 종전 주장해온 바와 같은 영업비밀 관련 주장을 상기와 같다고 확정된 것이므로 피항소인 B의 민소법 157조에 의한 각하 신청은 이유가 없다.

1978년에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것(비공지)로 비밀이었다는 것이 인정되지만, 부정경쟁방지법 2조 4항 7호(부칙 2조 내지 4조)의 영업비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1991년 6월 15일(평성2년 법률 제66호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부를 개정된 법률의 시행

기일)의 시점이나 파산회사가 나호장치의 제조판매를 시작한 1992년 3월의 시점에서, 무세미 제법(필수요건)과 기계장치 구조의 중요내용이 비공지로 비밀이었다는 항소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05 Key Point

비공지성은 시점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진다. 1987년 단계에서는 비공지성이 인정되지만, 부정경쟁방지법 2조 4항 7호(부칙 2조 내지 4조)의 영업비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1991년 6월 15일(평성2년 법률 제66호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부를 개정한 법률의 시행기일)의 시점이나 문제가 되는 제조 장치의 판매가 시작된 시점에서는 비공지성이 인정되지 않게 된다. 특히 출원의 공개 특허공보는 비공지성은 공지성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과 같다.

비밀성 또한 같은 이유로 평성 3년 6월 15일 및 평성 4년 3월 시점에서 인정되지 않으며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상기 공개특허공보나 실용신안공보 등을 본 당업자라면 쉽게 이해하거나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비공지였다고 할 수는 없다.
